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43
----------	-------

발의연월일 : 2026. 5. 13.

발 의 자 : 김영호 · 백혜련 · 김 윤
김준혁 · 김문수 · 박성준
김준환 · 백승아 · 박홍배
강경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진로교육 및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유럽 주요국은 교육과정에서 독서를 단순히 개인적 취미를 넘어 교육의 핵심 가치로 여기며 국가 문화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독서진흥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아기부터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문해력 문제와 함께,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 함으로써 국민들이 문해력을 함양하고,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22조의7 신설).

법률 제 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7(독서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독서를 통해 문해력을 함양하고,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독서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2조의7(독서교육)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독서 를 통해 문해력을 함양하고, 창 의성과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독서교육 진흥을 위 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 여야 한다.</u>